

이것이 알고 싶다

원자력법과 시행령 중에 벌금과 과징금에 관한 질문

◎ 질 의 : 임춘기

안녕하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 제1발전소에 근무하는 임춘기라고 합니다.

올해 SRO면허 응시준비 중인데요.

법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헛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원자력법령 제13장 벌칙을 보면 제118조 1항에 법 제1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구요.

원자력법 시행령 제 9장 보칙에 보면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법 제1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3500만원의 과징금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두 경우가 같은 위반사항으로 보여지는데요. 왜 벌금과 과징금의 액수가 차이가 나는지요?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몇개 더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던데요.

이건 벌금과 과징금이라고 다르게 해석해서 각각 부과하는 건지요?

아니면 법개정상의 오류가 있는 건지요?

그리고 이해가 안되는 건 제11조 제1항 전단 규정을 어겼을 때는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왜 또 과징금은 책정이 안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 변 : 김상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술연구부 법령기준실)

질문은 2가지 이군요. 하나는, 11조 1항 후단의 위반에 대하여 118조의 벌금과 시행령 별표의 과징금 액수가 다른 이유이며, 다른 하나는 11조 전단의 위반에 대하여는 벌금만 있고 과징금이 없는 이유이군요. 첫째 의문에 대하여는 결론부터 말하면, 입법상의 과오가 아니라 과징금과 벌금은 원래 그 성질이 다른 것이어서 그리 된 것입니다.

행정법 (또는 행정법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 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은 전통적으로 다음의 3가지 대응 수단이 있습니다.

i) 행정강제로서, 원자력법 제100조 제3항 및 제4항처럼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기부장관은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행정상 바람직한 상태를 행정청이 강제로 실현하는 것과 ii) 인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로서, 제17조, 제24조, 제68조 등과 같이 기존의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해 버리는 것이며(현대사회의 대부분의 생업이 인허가를 요소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iii) 마지막으로 행정벌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행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은 이와는 별개로 비교적 새로이 등장한 역사가 짧은 제재수단입니다. 이는 위 ii) 인허가의 취소, 정지의 변화된 모습으로서 볼 수 있으며, 인허가를 “정지”(취소는 아닙니다)에 해당할 할 경우에 만일 정지처분한다면, 그것이 위반자인 사업자에게보다는 전기사용자와 같은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거나 하는 공익적 이유가 있는 경우(제17조 2항 참조)에는 정지에 같음하여 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80년대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도입되기 시작한 제도로써 사업자의 불법적 이익을 박탈해 버리겠다는 취지에서 금액이 다액인 경향이 있습니다(통신사업자에 대한 수백억원의 과징금 등).

문제의 답변으로는 벌금은 징역 등과 같은 위 iii)의 행정벌의 하나로서 전통적 제재방법이고, 과징금은 새로이 등장한 제4의 제재수단으로서 그 혈통은 위 ii) 인허가 취소, 정지의 변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하여 행정벌과 과징금은 병과(두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통은 다르지만 같은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과 벌금의 병과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면, 11조 전단의 위반은 “정지” 대상이 아니라 “취소”의 대상으로서 이는 과징금으로 같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보 마당

금연의 날...5원칙 잘 지키면 “담배 끝”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금연의 날’이다. 한국은 성인 남성흡연율이 올해 처음으로 50% 이하로 떨어지는 등 흡연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에 비해서는 흡연인구 비율이 아직 높은 편이다.

금연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실제 끊기 쉽지 않은 것이 담배다. 금연에 성공하려면 금연 시작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성공률이 높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지적이다. 미국 인디애나대학 치과대학 박기철 명예교수는 금연 시작전 2주간 준비과정과 금연 시작후 2주간의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교수가 지난해 ‘치과연구’ 지를 통해 소개한

‘금연 5원칙’이다.

- 금연날짜 택일 : 먼저 생일이나 기념일 등 기억하기 쉽고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을 선택해 흡연을 중지하는 날짜로 정한다. 금연을 시작할 날짜를 결정한 뒤에는 이를 달력에 크게 표시하는 등 반드시 성공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상기시킨다.
- 주위환경 바꾸기 : 담배를 오래 피웠다면 자신의 주변에 흡연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보통이다. 금연 시작 2주전부터는 집이나 회사에서 담배, 재